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58

발의연월일: 2021. 2. 10.

발 의 자 : 홍기원 · 고영인 · 기동민

김민기 · 김상희 · 박상혁

박성민 · 신동근 · 우원식

진선미 · 최종윤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(운수종사자)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고, 성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면 해당 사실을 시·도지사 및 운송사업자에게 알려 종사자격을 취소·정지하거나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운전자격을 취득했지만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, 성범죄자 등이 택시 또는 버스운전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 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, 성범죄자 등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운송수 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9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 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의 범죄경력 등 제87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9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국
	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
	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
	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
	경찰청장에게 제24조에 따른
	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
	의 범죄경력 등 제87조에 따른
	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
	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	을 요청할 수 있다.